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www.dlightlaw.com
8F 311 Gangnam-daero Gangnam-gu Seoul, Korea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11, 8층
T 82 2 2051 1870
F 82 2 2051 1877
info@dlightlaw.com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국내외 규제동향으로 보는 2022년 가상자산 사업의 전망

2021. 12. 14.

조원희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 원 희 변 호 사

- 2001년~2017년, 법무법인 태평양
- (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MIP 겸임교수
-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
- (현) 서울대 덴탈메디케어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
- (현)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현) 부산블록체인특구 자문변호사
- (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D'Light Mission –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 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 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FATF의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 De-fi, NFT

[FATF 2021. 10.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53. Digital assets that are unique, rather than interchangeable, and that are in practice used as collectibles rather than as payment or investment instruments, can be referred to as a non-fungible tokens (NFT) or crypto-collectibles. Such assets, **depending on their characteristics, are generally not considered to be VAs under the FATF definition**. However,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nature of the NFT and its function in practice and not what terminology or marketing terms are used. This is because the FATF Standards may cover them, regardless of the terminology. **Some NFTs that on their face do not appear to constitute VAs may fall under the VA definition if they are to be used for payment or investment purposes in practice**. Other NFTs are digital representations of other financial assets already covered by the FATF Standards. Such assets are therefore excluded from the FATF definition of VA, but would be covered by the FATF Standards as that type of financial asset.17 Given that the VA space is rapidly evolving, the functional approach is particularly relevant in the context of NFTs and other similar digital assets. Countries should therefore consider the application of the FATF Standards to NFTs on a case-by-case basis

FATF의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 De-fi, NFT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 FATF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오며, 주요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함.
- 지금까지의 결론은 어떤 특정 서비스나 BM이 규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무엇이든 기준에 맞추어 판단한다는 것임.
- 이번 개정의 경우 NFT에 대한 의견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NFT의 특성에 따르면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NFT의 성격과 실제 기능을 고려해야 하며, 지불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음.
- De-fi도 마찬가지.
- 최근의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의 기준에서 벗어난 해석은 거의 보이지 않음.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의 개정. 향후 FATF의 입장이 예상을 넘어선 규제 이슈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EU - MiCA

-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20. 9. 24. '암호자산 시장 규정'(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을 EU 위원회와 의회에 제안. EU 위원회와 의회가 비준하는 경우 회원국에 대해 법률과 같은 강행적 효력이 있음.

EU - MiCA

-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자 보호를 규정함.**

규제 대상	세부 사항
발행인 규제	발행인은 법인. 백서 발간 의무. 신의성실 의무.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규제
공시의무	백서의 의무공시사항 및 법적 책임. 백서의 주요 내용 및 형식 규제. 발행인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상충 관련 공시. 내부정보 공시. 제재내용 공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시세조종행위 규제. 내부자거래 금지
사업자 규제	다양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진입 및 행위 규제. 승인 요건. 정직, 공정, 전문성 의무. 이해상충 관리의무. 고객자산 보호의무. 자기자본, 보험가입 등을 포함한 건전성 요건

(김갑래, "미국과 EU의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제도의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EU - MiCA

-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 체계의 EU의 MiCA는 국내 규제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함. 최근 금융위의 ICO 허용 가능성 언급도 같은 맥락임.
- EU 위원회와 의회가 조만간 비준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실제 MiCA 절차에 따른 가상자산 발행 등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또한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추가 규제의 가능성도 있음.
- 스위스(EU 아님), 에스토니아, 몰타, 지브롤터,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 지역에서의 토큰 발행이 있었지만, 사업적으로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음. (비용, 관리의 어려움, 결국은 규제 이슈 등)
- 국내 입법화가 너무 지체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업체가 MiCA의 혜택을 위해서 유럽까지 가지는 않을 듯 함. 다만, 서비스나 BM에 따라서는 유럽 거점이 필요할 수 있고 그 경우 이용 가능성 있음.

미국 - SEC

- 미국 SEC는 시종일관 증권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 미국은 '증권'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어 규제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넓음.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SEC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임.
-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선제적 규제에는 신중하다는 것. 대신 문제가 발생하면 철저하게 퇴출시킴.
- SEC, 2021. 11.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신청 불허
- SEC와 리플의 소송 - SEC는 리플이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여 증권법 위반을 주장

미국 - SEC

- 초기 일부 업체가 미국 SEC의 문을 두드린 적 있으나, 현재는 거의 없는 듯. 주로는 규제 면제의 방법으로 시도함.
- 미국 시장에의 영향을 주의할 필요 있음. 테라의 예에서 보듯이, global project는 언제든 SEC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규제적 관점에서의 시사점은 적은 편임.

가상자산 관련 개정/제정 법률안

구분	법률안	대표발의
개정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박용진
		강민국
		배진교
		정희용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이주환
		이용
제정법	가상자산법안	이용우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김병욱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	양경숙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법	권은희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법	민형배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	윤창현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 기본법	김은혜

가상자산 관련 개정/제정 법률안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 특정금융정보법으로 가상자산사업 전체를 규율할 수 없다는 인식은 공유됨.
- 다양한 업권법이 발의되고 있고, MiCA의 완결적 내용이 국내 입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너무 많은 법안이 상정되어 있어 정부가 입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이해는 낮은 편이고 MiCA와 같은 포괄적 입법에 대한 준비는 부족한 상황임.
- 특히 특정금융정보법에 규정된 '가상자산 ' 이나 '가상자산사업자 ' 의 범위/분류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나, 이 부분에 있어 FATF와 해외 입법례와 실무를 아우르는 조망을 하지는 못하고 있음. 오랜 기간의 정책 부재가 낳은 결과.

가상자산 관련 개정/제정 법률안

D´LIGHT
법무법인 디라이트

- 대선 국면에서 적극적인 규제 입법은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적극적인 육성 입법도 금융위원회 등의 반대로 어려울 것임. 결국 대선까지는 큰 방향이 논의되고, 대선 이후 구체적인 입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
- 앞으로 6개월 정부와 산업계, 국회의 깊은 논의 과정이 필요함. 가상자산의 특성에 맞추어 규제의 기준을 나누고, 큰 줄기의 규제 방향을 정해야 함. 자금세탁과 거래자 보호가 두 축임. 금융투자상품(증권)의 영역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시도를 해 볼 필요 있음.
- (1) 현재의 상황이나 실무를 반영한 자금세탁 규제의 개선, (2) 거래자 보호를 위한 업권법의 조속한 입법, (3) STO 등 혁신적인 금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도, (4)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가이드라인 제공 등이 필요함.

NFT

- 김동환 변호사 발표자료 참조
- 가상자산 사업이 규제 이슈를 최소화하고 산업적 규모로 진행될 수 있는 연결고리.
- 정부가 NFT의 다양한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봄. (NFT가 가상자산이나 증권에 해당된다고 규제 대상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일 것임.) 결국 산업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검토와 정리가 필요함.
- 게임산업과도 맞물려 있는 이슈인데, 등급분류/보류는 매우 보수적인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향후 단기간 내에 판매/교환이 가능한 NFT 아이템이 적법하게 이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토큰 발행/판매

- 금융위원회, 2021. 11. 23. 국회 정무위원회에 '가상자산업권 기본방향 및 쟁점' 제출

  - ICO 사실상 허용. 발행 자격 법인으로 제한
  - ICO시 백서 제출 의무화. 전문기관의 코인 평가 의견서 필요. 중요 정보 공시의무
  - 법령에 거래소 상장 기준 및 절차 규정 명시
  - 상장과 상장폐지 심사는 현행과 같이 개별 거래소가 규정에 따라 진행
  - ICO 공모 자금은 외감법에 따라 재무제표 공시
  - 무인사, 무등록 ICO시 형사처벌,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시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

- MiCA와 비슷한 규제 방향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도 병행해서 이행해야 함

- 유틸리티형 토큰을 활용하는 서비스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기타

-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 1. 1.부터 1년 유예. 세금 납부는 2024. 5.부터 시작될 예정.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할 수 없는 문제 상황

결론

결론

- 예상을 벗어난 국내외 규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자금세탁 규제 frame은 거의 마무리.
-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가시화로 본격적으로 제도화 진입. 대기업/중견기업이 시장 진입을 고려한다면 적절한 시기.
- 입법/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실행에서는 다양한 장애 예상. 정부 정책만 기다리지는 말 것.
- NFT는 법적 risk가 적은 것부터. 게임 관련 NFT는 규제 풀리기까지 시간 상당히 걸릴 것. 가상자산 NFT는 해외도 고려
- 토큰/발행은 업권법 제정시까지는 해외 고려 가능.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하지 않기 위한 고려 필요함.

www.dlightlaw.com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조원희

02 2051 1871
010 5056 0188
whc@dlightlaw.com